

자동계좌이체약관(핀뱅킹, 금융결제원 CMS)

제 1 조(약관의 적용)

핀뱅킹/금융결제원 CMS 자동계좌이체서비스(이하“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자”라 한다)와 씨티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① “핀뱅킹”이란 이용기관과 은행간 상호 연결된 전산망(전용선 또는 VAN)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금융결제원 CMS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기관공동자금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이용기관”이란 자동이체 지정계좌에서 출금할 것을 의뢰하는 기관으로서,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과 자동이체 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합니다.
- ④ “자동이체”란 이용기관이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⑤ “납부자”란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이용기관에 납부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고객을 말합니다.
- ⑥ “자동이체 지정계좌”란 납부자가 자동이체를 위해 출금될 수 있도록 지정한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 ⑦ 본 약관의 영업일은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로 합니다.
 1.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 3 조(출금)

-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은행 앞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자동이체 지정계좌에서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합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과실책임)

- ① 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은행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 계좌 지급 제한 등과 같이 납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출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5 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 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 6 조(출금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여러 건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별첨> 자동이체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제 7 조(최초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 8 조(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로부터 서면 등을 통해 출금의 동의를 받는 방법
2. 이용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로부터 서면,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단,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은 이용기관이 합니다.

제 9 조(신청서 제출기한)

제 8 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변경)신청 시 해당 납기일 30 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 ①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요청대로 출금하며, 출금시 은행은 출금금액 및 출금일자에 대한 정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② 출금금액과 출금일자의 정당여부는 납부자와 이용기관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이용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자동이체 해지)

- ① 납부자가 요청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요청 시 동일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 여러 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③ 자동이체 해지는 은행 창구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 ④ 이용기관이 출금요청을 한 당일에는 자동이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1 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4 조(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적용)

제 8 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15 조(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16 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

제 17 조(계좌이동서비스)

- ① 펌뱅킹 및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납부자가 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 ④ 납부자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출금계좌를 타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 ⑤ 제 14 조에 따라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

별첨.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1. 타행자동이체
2. 한도초과미수이자
3. 카드대금
4. 대출금(분할상환, 이자)
5. 자동계좌이체
6. CMS
7. 계좌간 이체
8. 납부자 자동이체

<자동계좌이체 약관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4조 (과실책임)</p> <p><u>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u></p> <p>제 8조 (자동이체 신청)</p> <p>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p> <p>1.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p> <p>2. 이용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p>	<p>제4조 (과실책임)</p> <p>① <u>은행 시스템 오류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한 납부자 피해는 은행이 부담합니다.</u></p> <p>② <u>은행이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예금잔액 (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 계좌 지급 제한 등과 같이 납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출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u></p> <p>제 8조 (자동이체 신청)</p> <p>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p> <p>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p> <p>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p>	<p>은행의 귀책사유 명시, 고객의 중대한 과실 명확화</p> <p>이용기관의 본인확인 명확화</p> <p>타 자동이체 약관과 동일하게 관계법령 삭제</p>

<p>자로부터 서면,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p> <p>제 9 조 (신청서 제출기한)</p> <p>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p> <p>제 10 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p> <p>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p>	<p>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u>단, 이 경우 납부자 본인확인</u>은 이용기관이 합니다.</p> <p>제 9 조 (신청서 제출기한)</p> <p><u>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u></p> <p>제 10 조 (출금기준 및 이의제기)</p> <p>① <u>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요청대로 출금을 하며, 출금시 은행은 출금금액 및 출금일자에 대한 정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u></p> <p>② <u>출금금액과 출금일자의 정당여부는 납부자와 이용기관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의제기는 이용기관에 하여야 합니다.</u></p> <p>제 11 조 (자동이체 해지)</p>	<p>해지신청서 제출 관련 내용 삭제</p> <p>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방법 명확화</p> <p>출금동의 철회방법</p>
--	---	---

<p>제 11 조 (자동이체 해지)</p> <p>⑤ <u>납부자가 요청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u></p> <p>⑥ <u>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요청 시 동일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 여러 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u></p>	<p>① <u>납부자가 요청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u></p> <p>② <u>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요청 시 동일계좌에 동일 이용기관으로 여러 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u></p> <p>③ <u>자동이체 해지는 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u></p> <p>④ <u>이용기관이 출금요청을 한 당일에는 자동이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u></p>	<p>및 절차 명확화 (자동이체 해지)</p>
<p>제15조 (약관의 변경)</p> <p>① <u>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u></p> <p>② <u>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u> <u>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u> <u>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u></p>	<p>제 15 조 (약관의 변경)</p> <p><u>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u></p>	<p>전자금융 거래기본 약관 준용으로 문구 수정</p>

<p><u>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u></p> <p>③ <u>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④ <u>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u></p> <p>⑤ <u>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u></p> <p>제 16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p> <p>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p> <p>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u></p>	<p>제 16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p> <p>③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p> <p>④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적용합니다.</u></p>	<p>전자금융거래 관련 관계법령 나열</p>
--	--	----------------------------------

심의번호 : 1812-01-484 (심의일 2018.12.26)